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

보도시점 3.9.(월) 조간 < 3.8.(일) 12:00 >

중기부, 협업하는 소상공인에 힘 싣는다

-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 모집공고 -

-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공동생산·판매, 기술개발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 지원(40개 조합, 조합당 0.5~3억원)
- '혁신성장 단계'를 신설하여 협동조합의 스케일업을 위한 지원 강화(최대 3억원)

중소벤처기업부(장관 한성숙, 이하 중기부)는 9일(월)부터 2026년 **「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」**에 참여할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모집한다고 밝혔다.

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은 소상공인 간 협업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협동조합 및 조합원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. 지원 대상은 **전체 조합원**이 **5인 이상**이고, **조합원 50% 이상**이 **소상공인으로 구성**된 **협동조합 및 연합회, 자율상권조합** 등으로 이들의 **공동생산·판매, 기술개발·마케팅, 브랜드 개발 등**을 **지원**한다.

올해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에서는 **'혁신성장' 단계를 추가**(최대 지원한도 3억원)하여, **'성장-도약-혁신성장'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**을 할 계획이다.

이와 함께 협동조합 선정시, ①사회문제 해결을 추진하는 협동조합, ②사회연대경제 조직 또는 대·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협동조합, ③사업체를 보유한 조합원 100%가 동일 지역(시·군·구)에 소재한 협동조합에 대해 우대한다. 이를 통해 **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**하고, **협동조합의 성장모델을 다각화**하여 **지역경제를 활성화**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**협동조합의 역할을 강화**해 나갈 계획이다.

김정주 소상공인정책관은 "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개별 소상공인은 홀로 사업운영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다."며, "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조직화하고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소상공인 협동조합 발굴 및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"고 밝혔다.

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은 3월 9일(월)부터 중기부 누리집(www.mss.go.kr)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, 참여를 희망하는 협동조합은 소상공인24(www.sbiz24.kr) 및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누리집(coop.sbiz.or.kr)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.

담당 부서	소상공인정책관 지역상권과	책임자	과 장	신재경	(044-204-7880)
		담당자	사무관	신웅기	(044-204-7888)
			주무관	윤혜림	(044-204-7868)

참고 |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 개요

□ **(목적)** 소상공인 간 협업으로 규모의 경제 실현을 도모하고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협동조합(조합원)의 경쟁력 제고

□ **(지원대상)** 5인 이상이고 조합원 50%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

* 협동조합기본법,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, 연합회 등

□ **(지원규모)** '26년 40개 조합 (조합당 0.5~3억원)

* (보조율) 공동장비 70%, 공동일반 80%

□ **(지원내용)** 공동생산·판매, 기술개발 등 협동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제반 비용 (공동장비·공동일반) 지원

지원분야		세부내용
공동장비		• 품목당 3백만원 이상의 장비(생산, 검사, 연구 등 공동사업 용도) 지원
공동일반	개발	• 신제품·기술, 공정개선, ERP 구축, 비즈니스 모델(BM) 등 각종 기법개발
	브랜드	• 브랜드(CI, BI, 네이밍, 캐릭터), 디자인(상품, 포장)
	마케팅	• 홍보물(리플렛, 카탈로그 등), 광고(온·오프라인) 등
	네트워크	• 홈페이지, 온라인 판매시스템 등 *** 3년 이상 유지관리 의무**
	규모화사업	• 조합원수 및 조합원 분포지역 확대를 위한 (예비)조합원 대상 교육사업(설명회) 등 협동조합 자체사업
	프랜차이즈 시스템	• 정보공개서, 가맹계약서, 프랜차이즈 매뉴얼, 프로세스 및 공정개선을 위한 개발비
	상권활성화	• 지역상권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 등 상권활성화 활동

□ **(지원유형)** 성장단계별 **지원한도 차등** 적용

구 분	지원한도 (분야별 정부보조 비율)	선정규모
성장단계	0.5억원 (공동장비 70%, 공동일반 80% 이내)	24개사 내외
도약단계	1억원 (공동장비 70%, 공동일반 80% 이내)	12개사 내외
혁신성장단계	3억원(공동장비 70%, 공동일반 80% 이내)	4개사 내외

* 지원한도는 공동장비와 공동일반 분야 지원금액을 합산한 국비 총액 기준